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

의안 번호	188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1. 25.

발의의원 : 서도원 의원

1. 제안이유

-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힘쓰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책무, 청소년의 권리, 청소년 노동권의 사업(안 제3조~제6조)
- 다. 민관협의체 구성·운영, 노동인권 상담 및 지원체계,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(안 제7조 ~ 제9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, 「근로기준법」 제64조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 및 「근로기준법」 제64조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, 달성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달성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청소년 노동인권”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3. “사용자”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,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이라 한다)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청소년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,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청소년 노동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달성교육지원청(이하 “교육지원청”이라 한다)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청소년 노동 관련기관,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,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·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청소년 노동자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청소년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⑤ 군수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4조(청소년의 권리) ① 청소년 노동자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.

- ② 청소년 노동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, 산업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.

- ③ 청소년 노동자는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통해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청소년 노동권의 사업)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
2. 청소년 노동권의 보호 교육 및 강사 양성
3.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권의 보호 준수 교육
4. 청소년 노동권의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
5. 청소년 안전 일자리 육성 및 창출
6. 청소년 안전 노동권의 지킴이 운영
7. 청소년 경제활동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
8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민관협의체 구성·운영) 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사업의 자문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, 교육지원청, 지방고용노동청, 사용자 등 청소년 노동 관련기관, 청소년 단체, 청소년 노동교육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, 진로담당교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통합 지원체계) ①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 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,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.

제9조(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)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.

제10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